

의안번호	제 524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11월 22일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순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4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22일

발의자 : 임순목, 이광진, 강현삼,
김봉희, 박병진, 장선배,
윤은희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법령 정비(안 제4조제2항)

나.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관리기준)”을“(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관리기준”을 “세부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1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3항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이하 생략)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5.30.]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